

 신안산대학교	<b>전임교원 특별채용에 관한 규정</b>	규정 번호	2-3-24
		제정 일자	2018. 11. 13.
		개정 일자	2024.3.20.
		책임부서/팀·계	교무처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학교법인 순효학원 정관 제42조의8 및 교원인사규정 제12조에 의하여 교원의 특별채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임용자격)** 특별채용 교원은 교원인사규정 제10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1. 사립학교법 제5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
2. 교원이 파견·연수·정직·직위해제 또는 휴가 등으로 1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
3. 임용 예정 직에 상응한 연구실적 또는 근무실적이 3년 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
4. 교육경력·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
5. 국·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을 본 대학 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
6. 외국인 임용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
7. 대학 업무수행에 특별히 필요하여 교육·연구·산학협력 업적이 탁월하거나 또는 관련분야 전문 지식이 우수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

**제3조(임용계획)** 특별채용은 필요시 학과의 요청 또는 추천을 받은 신임교원후 보자에 대한 추천서 [별지 1]를 접수하고 교무처장은 특별채용 분야를 포함한 신임교원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는다. <2021.8.20. 개정> <2023. 3. 30. 개정> <2024.3.20. 개정>

**제4조(임용시기)** 교원의 특별채용은 그 시기에 제한을 두지 않고 수시로 할 수 있다.

**제5조(채용공고)** 특별채용은 비공개에 의하여 채용 할 수 있다. 다만, 공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채용의 공고사항 일부를 생략하여 공고할 수 있다.

**제6조(제출서류)** 특별채용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임용지원서 1부. (본 대학 소정양식)
2. 자기소개서 1부.
3. 대학 및 학과발전 계획서 1부.
4. 연구실적목록 1부.
5. 성적 및 졸업증명서 각 1부.
6. 경력증명서 각 1부.
7. 기타 서류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각 1부.

**제7조(심사기구)** ① 특별채용 심사를 위하여 교원특별채용심사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

1. 기초 및 전공심사 : 학과장을 포함한 전공 관련 교수 3인 이내
2. 면접심사 : 총장, 부총장, 교무처장을 포함한 5인 이내 <2021.8.20. 개정> <2023. 3. 30. 개정> <2024.3.20. 개정>

② 채용분야에 관련되는 분야의 전임교원이 부족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총장은 심사위원을 다르게 구성할 수 있다.

**제8조 (심사단계)** ① 특별채용에 의한 심사단계는 기초 및 전공심사, 면접심사로 실시한다.

1. 기초심사 : 채용후보자의 전공분야 일치성에 대한 적격여부 심사
2. 전공심사 : 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우수성 및 경력 등 심사

3. 면접심사 : 채용후보자에 대한 교육관, 교수로서의 자질, 인성 등 심사

② 특별채용에 관한 세부 심사기준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.

**제9조 (임용예정자의 결정)** ① 교원특별채용심사위원회의 기초 및 전공심사를 거쳐 면접대상자를 선정하고 임용예정자는 면접심사의 평균종합득점이 80점 이상인 자로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임용예정자의 임용여부와 임용일자, 직위 등을 결정하고 이사장에게 그 임용을 제청한다.

**제10조(준용)**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학교법인 정관, 교원인사규정 및 제 규정을 준용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.